체육인 복지법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3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김승원·박 정·박광온

안민석 · 정정순 · 김진표

오영훈 • 한병도 • 김성주

이성만 · 임호선 · 이장섭

전용기 • 전재수 • 김용민

이상헌 • 조정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스포츠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열 망에 이바지한 선수·지도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체육인들의 불안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 은퇴 뒤의 진로 불확실 등 체육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현재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 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및 제12조).
- 바.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 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체육인 복지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 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등

-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체육발 전을 위하여 공헌한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이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체육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 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인의 권익보호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의 강요 등

- 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 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 제8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 중증질환을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 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

- 수·지도자에게 경기력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장애연금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복지후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국적상실 등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화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정지, 상해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 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선수의 범위, 보험 및 공제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선수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그 지급기준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특별 보조) ① 국가는 국위 선양과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인이 그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특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 보조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을 대여할 수 있다.
- 제14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 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체육인은 운동환경 개선, 운동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제2조 정의의 각 목에 해당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프로 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고용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체육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의 장에게 체육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체육인을 고용한 사업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체육인복지서비스 지원 및 전담기구 지정

제17조(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체육인의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 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2.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체육인 복지 및 진로 지원
- 2. 체육인재 육성
- 3. 체육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 4. 체육인의 복지 · 권익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5.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6.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전담기관의 재원 등)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3. 그 밖의 수익금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1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 거나 알선하는 행위
 -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2조(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준용규정) 제8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의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으로,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 2. 제9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 3. 제10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
 - 4. 제11조에 따른 장학사업
 - 5. 제12조에 따른 특별 보조

- 6. 제2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 7. 제23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의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 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